

1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(법률 제 16719호 ‘19.12.3 공포, ‘20.6.4 시행)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과태료 감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,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(제33조의2 신설)

개정 「국민건강증진법」(법률 제 16719호 ‘19.12.3 공포, ‘20.6.4 시행) 제34조제5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감면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

- 1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이수시 과태료의 50%를,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시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
- 2) 금연교육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근 2년간 2회 받은 자,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및 감면 신청 중 재차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자는 과태료를 감면하지 아니함
- 3)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부과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고,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

나.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위탁 및 개인정보 수집근거 신설(제32조 및 제32조의2 개정)

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에 필요한 감면 신청자 관리 및 금연교육·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 등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자 관리 및 금연교육·금연
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에 관한 업무

제3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32조제1항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
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과태료 감면기준 등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·도지사
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
상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
제할 수 있다. 다만, 최근 2년간 법제34조제5항에 의한 과태료 감경
또는 면제를 2회 받은 자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
하지 아니한다.

1. 제6항제1호에 따른 금연교육 이수자 :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
경

2. 제6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: 과태료 면제

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경과 면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신청을 한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.

1. 제1항제1호에 의한 금연교육 신청 :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

2. 제1항제2호에 의한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: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신청자가 제3항 각호에 의한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⑤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신청자가 제3항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에 다시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경 또는 면제 절차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⑥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

의 종류와 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,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시
·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보건복지
부 장관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: 3
시간 이상 이수

2. 금연지원서비스

가. 보건소 금연클리닉 :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상
담

나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:
프로그램 이수

다.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여 실시하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: 캠프
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, 2회 이상 대면상담

라. 금연상담전화(1544-9030) : 100일 프로그램 이수

- ⑦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
하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
이후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행위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

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업무위탁)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 제3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32조(업무위탁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자 관리 및 금연교육·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에 관한 업무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3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32조제1항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 <u>제33조의2(과태료 감면기준 등)</u> ① <u>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과</u>

태료 부과 대상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최근 2년간 법제34조제5항에 의한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2회 받은 자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제6항제1호에 따른 금연교육 이수자 :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

2. 제6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 : 과태료 면제

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경과 면제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신청을 한 경우 각

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
를 유예할 수 있다.

1. 제1항제1호에 의한 금연교육

신청 :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
개월

2. 제1항제2호에 의한 금연지원

서비스 신청 : 신청서 제출일
로부터 6개월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
구청장은 과태료 감경 또는 면
제 신청자가 제3항 각호에 의한
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
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
스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
니한 경우 지체 없이 제33조제1
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⑤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신청
자가 제3항의 과태료 부과 유예
기간 내에 다시 법 제9조제8항
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, 시·도
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감경 또는 면제 절차를 중단하
고 지체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
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⑥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
기 위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

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은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, 금
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
으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
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
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
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
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: 3
시간 이상 이수

2. 금연지원서비스

가. 보건소 금연클리닉 : 3개
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
회 이상 대면상담

나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
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
지원사업 : 프로그램 이수

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
여 실시하는 집중치료형
금연캠프 : 캠프 수료 후 3
개월간 등록 유지하고, 2회
이상 대면상담

라. 금연상담전화(1544-9030)
: 100일 프로그램 이수

⑦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
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

<u>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거둬 감 정할 수 없다.</u>

제 호

확 인

신 청 서

1. 성 명 :

2. 주민등록번호 :

3. 적반일시/적발장소 :

4. 과태료 납부 부과번호 :

위 사람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에 따른 소정의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.

[]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교육(법 제34조제5항) : 과태료 50% 감경

[]과태료 감면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(법 제34조제5항) : 과태료 면제

[]보건소 금연클리닉

[]병·의원 금연치료

[]전문치료형 금연캠프

[]금연상담전화

※ 최근 2년간 2회 과태료 감면을 받은 분 및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분은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※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내(과태료 감면 제도 이수 중)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해당 면제 절차를 중단하고 과태료가 전액 부과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))

(과태료 감면 프로그램) 참여 확인서

발급번호:

수신기관명	(적발지자체)	등록일	0000.00.00.
참여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등록번호
	홍길동	000000-0*****	000000

(과태료 감면 프로그램) 참여 확인내역

연번	등록번호	참여일자 (상담·진료·교육일자)	비고
1	000000	0000.00.00	
2	000000	0000.00.00	
3	000000	0000.00.00	
4	000000	0000.00.00	

이와 같이 (과태료 감면 프로그램) 참여내용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과태료감면교육 또는 서비스기관의 장 직인

이 확인서는 (과태료 감면 프로그램) 참여내역 확인용으로 ‘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 중병’의 용도로만 사용되며,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발급 기관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	
연 락 처	044 - 202 - 2822